

# 청산가스 농약, 검증 없이 사용...

## 수입농산물 병해충 소독용으로 ... 가스 이유로 성적서 미제출

청산가스 농약이 독성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식물검역기관의 수입농산물 병해충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가스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지정됐다.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청산가스(HCN) 농약의 독성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우남 의원은 “청산가스 농약은 식물검역기관에서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병해충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농진청에 독성시험 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독성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농진청 고시에는 농약으로 사용하려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독성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산가스 농약은 2000년에 이어 2010년에도 농약으로 등록됐으나 형태가 가스라는 특성과 지나친 독성 때문에 독성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김우남 의원은 “최근 구미에서 많은 주민을 고통에 빠뜨린 불산(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가스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스 농약도 잘못 관리하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독성 구분을 확실히 하고 독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0>